

성학대, 성적 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 보 호와 대체에 관한 방침

시에틀 교구청

인사과

10월 1일 2007년 | 2011년 7월 개정 | 2015년 6월 개정



목차	서문	2
	방침	2
	정의	2-4
	검열 및 선정	4
	연수	5
	보고	5
	교회직원에 대한 혐의 보고	6



서문

시에틀 교구청은 신자들과 성직자 그리고 교회 평신도 사목회 간의 성스러운 신의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각자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학대,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은 폭력적이고 해로운 행동이며, 이런 행동들은 교회 또는 나아가 사회에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시에틀 교구청은 오랜동안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노약자들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학교, 그리고 기관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에틀 교구청에서는 한 단계씩 발걸음을 해 나아 가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방침의 선포로서, 우리는 역사적인 노력을 기우려 규율 준수를 넘어 그 영역을 확대하여 전환으로 다가 가고 있습니다.

성학대,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 보호와 대체에 관한 방침은 사목회, 교회직원, 학교, 교구청직원 및 각 교구청 내의 모든 기관에서 (이하 교구청으로 칭함)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 됩니다.

이 방침은 2007년 10월 1일 부로 유효하며, 2004년 10월의 성학대와 미성년 성학대 혐의에 대한 대처 및 2000년 10월의 각료 책임 필요 조건을 대체 합니다. 그리고 이 방침은 그집행이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공평한 입장에서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배려와 지지를 약속하고 가해자에게는 민사권에 입각한 책임 전가를 위한 전문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에 보호, 교육, 및 선발 과정의 형성을 이룹니다. 이 방침은 대교구의 지휘자들과 다른 전문가 들의 조언, 법률, 교육 및 조사를 통해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이의 전문적인 도움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시에틀 교구청의 특별법으로 선포 되었습니다. 이 방침은 미국 주교회의 에서 지정된 아동과 청년의 보호 규정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며, 이 방침은 2003년 미국내의 교회에서 사제와 부제에 대한 미성년 성학대 혐의를 처리하는 공식적인 규정으로 정해 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5년 6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방침

교회 관계자가 공동체에 속한일원에게 행하는 성학대,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은 교회체제 또한 가톨릭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또한 이런 행위들은 교회내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징계의 대상이 되며 징계 내용에는 해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

성학대는 미성년, 노약자 또는 그행위를 허락하지 않은 성인들에게 성적인 접촉을 말합니다. 성학대는 아래 열거한 내용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접촉 또는 억압적인 행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 음란한 언행
- 음란한 사진 (미성년이나 노약자의) 을 보여 주거나 찍는것
- 미성년이나 노약자에게 음란 외설물을 노출시키는것

성적인 불법행위는 성년을 상대로 상대의 허락없이 성적인 접촉 또는 행위를 한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래 열거한 내용을 조건으로 합니다.

- 가해자가 교회, 학교 또는 교구청 기관의 이름을 빙자 하고
- 공식적인 연계관계가 있어야 하며
- 권한의 차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적인 청탁을 받는것을 말하며 이런 청탁의 배경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 성적 청탁이 직, 간접적으로 인사권의 이익을 빌미로 제시되거나,
- 이런 제안을 거부한 내용이 인사에 불리하게 이용되거나
- 이러한 일들이 직장내에 적개심이나 직장내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언급, 빈정거림, 농담, 달갑지 않은 성적 행동 및 접촉, 꼬집기, 포옹, 성적 행동을 위한 강압적 접촉이포함되지만 이것들에만 국한 되지는 않으며 이런 행동들이 인사권에 영향을 끼칩니다.

미성년은 18세 미만을 지칭 합니다.

노약자는 성인중

- 60세 이상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수 없는 자
- 발달 장애가 있는 자
- 19세 이상이며 법적 보호인이 있는자
- 자격증 소지자로 부터 가정방문 서비스, 호스피스, 또는 가정 방문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는자
- 목회의 도움을 받는자 또는*
-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를 말합니다.**

교회관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제와 부제 (성직자)

- a. 교구청에서 성직자로 임명 받은자
- b. 교회내의 회원 또는 교회의 서원을 한자 그리고 교구청에서 사제직을 받은자 또는 미사나 영성을 지도 할수 있도록 임명 받은자
- c. 우리 교구에 입적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교구에서 전임 되어 온 사제
- d. 교구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하며 교구내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고용 되거나 사목을 하는자

2. 신학대학생

- a. 교구청내의 신학 프로그램에 등록한자
- b. 교구청내 종신부제 프로그램에 등록한자

* 목회의 도움을 받는자 항목은 2011년 6월 개정에 첨부

*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 항목은 2011년 7월에 첨부

3. 수도회 (남성과 여성)

- a. 종교기관의 회원 또는 로마 가톨릭 교구청, 학교에서 근무하는자, 공적으로 영성지도나 미사또는 다른 신앙 활동을 하는자. (c678)
- b. 교구청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은둔자, 수도자

4. 평신도

- a. 교회, 학교 와 교구청 기관에서 임금을 받는자.
- b. 교회, 학교 와 교구청 기관에서 미성년이나 노약자를 상대하며 자유의지로 감독없이 봉사 활동을 하는자

선발과정 및 선발

어떠한 사람도 미성년이나 노약자를 상대로성학대,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는 교구청 내에서 고용되거나 봉사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성학대,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로 유죄는 선고 받지 않았으나 그런 일에 연류된 자는 누구도 교구청에서 고용하거나 봉사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신청서 양식

모든 일반직원들은 고용전에 직원 신청서에 서명 꼭 서명 해야 합니다.

감독 없이 미성년 또는 노약자와 접촉이 있는 봉사자들도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신원조회

교회내 모든 일원들은 교구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야만 합니다.

증빙서류

다른 지역에서 온 성직자와 공동체, 종교기관에 속한 일원들은 그들이 해당되는 합당한 상사로 부터 서면으로 그들의 경력과 품행에 대한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는 성학대,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 혐의 조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자들은 고용전에 아래 열거된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 직장 확인
- 두명의 전 직장상사 연락
- 만약 지원자가 교회, 학교 또는 교구청 기관의 직원이었다면 전 담당사제, 교장 또는 직장 상사와의 연락과 인사과의 연락 또는
- 지원자가 교사 또는 교장 이라면 신청서 양식과 지원자로서 가톨릭 학교 부서(Catholic School Department) 에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제, 종신부제, 또한 사제, 부제 지원자들은 교구청에서 정한 전문인에게 사목과 미성년과 일하는것에 관하여 정신감정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정신감정

사제, 종신부제, 또한 사제, 부제 지원자들은 교구청에서 정한 전문인에게 사목과 미성년과 일하는것에 관하여 정신감정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연수

새 교회직원 연수

교구청에 새로 들어온 모든 이들은 입사한지 삼일안에 아래 사항을 마쳐야 합니다.

- 성학대,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 보호와 대체에 관한 방침에 동의및 서명
- 교회 직무행위 표준규칙에 동의 및 서명
- 아동, 노약자 학대 혐의 보고에 동의 및 서명

교구청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모든이는 근무시작일로 부터 90일 안에 아동보호에 관한 연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속적인 직원연수

현 안전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회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직원 연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기타 연수 참가자

감독관 없이 공동체 내의 미성년이나 노약자, 부모, 청소년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는 봉사자들은 교구청에서 제공하는 연수에 참가해야 합니다.

보고

성학대 혐의의 보고

교회직원은 미성년이나 노약자에게 성학대가 의심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것을 알아낸지 48시간 안에 보고 해야만 합니다. 보고는 워싱턴주 사회보장국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핫라인 전화번호1-866-363-4276** 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직원이 성학대에 연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개인은 DSHS 에 보고 한후에 시에틀 교구청 핫라인 전화번호 1-800-446-7762로 보고 해야만 합니다.

만약 성학대 혐의에 교사나 교장이 연류 되었다면, 반드시 가톨릭 학교 부서 (Catholic Schools Department)에서 전문직 내 교육위원회 사무실 (Office of Professional Practices in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전화번호 360-725-6130 로 보고 해야 합니다.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 혐의의 보고

교회직원들 간에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이 의심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그것을 알아낸 48시간 안에 인사과 전화 1-800-261-4749 로 보고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일반인의 견해로 볼때 의심되는 상황 또는 아이가 직접 사건에 관해 이야기 할때

** 해당 법률기관에 관한 조항은 2009년 4월부터 발효합니다. 해당 법률기관에 관한 자문은 안전교육 사무실 전화 206-274-3188 연락 하십시오

교회직원의 혐의에 관한 대응

미성년 또는 노약자에 대한 성학대의 혐의

교회직원이 미성년 또는 노약자에게 성학대를 가한 뚜렷한 증거가 있을 때는 주교가 교회법에 의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주교는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교구청은 정부 당국의 조사에 협력 합니다.

교구청이나 정부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그 조사의 대상자는 본인의 안전, 공동체와 동료의 안전을 위해 공무휴직 조치 합니다. 공무 휴직중에는 그전에 받았던 보상과 혜택을 동일 하게 받습니다. 공무휴직 기간은 조사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조사과정은 그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항상 보호 합니다. 그 안에는 좋은 평판과 그의 개인 사생활이 포함됩니다. (c220). 사제나 부제가 연루된 성학대 조사에는 USCCB의 본질적인 규범이 포함됩니다.

미성년과 노약자가 연루된 단하나의 성학대가 인정 또는 확신될 경우 교회법이나 민사법에 따라 집행한후 가해자는 영구적으로 교회사목에서 제외 됩니다. 교회직원 또는 봉사자라 하더라도 근거있는 사건일 경우 그 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c 1395 2)

성학대 조사후에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그 조사 대상자는 예전의 직위로 복귀 됩니다. 교구청은 그 개인의 보호와 필요하다면 그사람의 좋은 평판과 명예를 회복할수 있도록 일합니다.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의 혐의

교회직원이 미성년 또는 노약자에게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을 가한 뚜렷한 증거가 있을 때는 주교가 교회법에 의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주교는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교구청이나 정부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그 조사의 대상자는 본인의 안전, 공동체와 동료의 안전을 위해 공무휴직 조치 합니다. 공무 휴직중에는 그전에 받았던 보상과 혜택을 동일 하게 받습니다. 공무휴직 기간은 조사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조사과정은 그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항상 보호 합니다. 그 안에는 좋은 평판과 그의 개인 사생활이 포함됩니다.

교회 관계자가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을 범했을 경우 교회법에 준하여 가해자는 직장이나 봉사직에서 해고까지 다다를수 있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 혐의 조사후에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그 조사 대상자는 예전의 직위로 복귀 됩니다. 교구청은 그 개인의 보호와 필요하다면 그사람의 좋은 평판과 명예를 회복할수 있도록 일합니다.

저자권 2007 시에틀 교구청

모든 권리 보장. 교회, 학교, 교구청 모든 기관에서는 이모든 서류를 배포 할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인, 단체들은 이 서류 어떤 부분도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제작또는 유출을 금합니다. 또한 시에틀 교구의 허락없이 사진, 녹음등을 할수 없습니다.

초판 2007년 10월 | 개정 2009년 4월 | 개정 2011년 7월 | 개정 2015년 6월